

수강료 내규

[시행 2006.1.1.] [2024.2.19.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동덕여자대학교 뉴에듀케이션칼리지의 수강료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3. 1.>, <개정 2024.2.19.>

제2조(수강료 책정) ① 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원가, 타 교육기관의 수강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까지 차년도 수강료안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19.>

② 원장은 학기 운영 중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할 경우 전항에 따라 수강료안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또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4.2.19.>

제3조(납부) 학생은 매 학기 수강료와 기타 납부금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부득이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.

제4조(반환금지) 수강료는 결석, 제적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아니한다.

제5조(감면) ① 학점은행제 학습과정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미술치료사, 가족상담사, 종이접기, 가베지도사, 풍선아트 등의 자격증 과정은 장학금내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 3. 1.>, <개정 2024.2.19.>

② 원장은 개설 강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정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(환불) ① 환불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환불사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. <개정 2024.2.19.>

1. 학점은행제 과정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 금액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	학습비 전액
수업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전	학습비의 5/6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	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	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	반환하지 않음

2. 학점은행제 이외의 과정

구 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 금액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업 시작 전	학습비 전액
	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	학습비의 2/3 해당액
	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	학습비의 1/2 해당액
	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	반환하지 않음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수업 시작 전	학습비 전액
	수업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③ 삭제 <2020. 3. 1.>

④ 휴학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 내규의 환불 기준에 의거 수강료를 환불한다.

⑤ 복학자가 휴학 당시 수강료 환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이 내규에 의거 수강료를 인정하고 복학 시에는 해당 학기 수강료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내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개정내규는 2009년도 1학기 학습자들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내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내규는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내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내규는 201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3. 1.>

이 개정내규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4.2.19.>

이 개정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